제897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(강화) ○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근거 마련 – 다중채무자가 금융기관 5개사~ 6개사를 이용하는 경우,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30%를 추가로 적립하고, 금융기관을 7개사 이상 이용하는 경우,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50%를 추가로 적립하게 함 ▶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2.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산정(강화) ○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규정 ▶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	1.비중요 2.비중요
2	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위탁관리인 지정 · 신고(강화) ○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(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)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별표1 신고사항에 추가 ▶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 시멘트제조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/관리 조치기준(강화) ㅇ 시멘트 제조업 특성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및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등 규정 ▶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. 시멘트제조업 오염물질 측정/조사기준(강화) ㅇ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비산먼지 농도를 분기마다 1회 측정하여 기록 ㅇ 사업장에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·운영시 해당 법에 따라 잔류성 오염물질을 측정·기록·보존하고,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▶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3. 시멘트제조업 최대배출기준(강화) ㅇ 시멘트제조업 주요 시설에서 배출되는 일부 오염물질의 최대배출기준 규정 – 먼지, 질소산화물, 염화수소, 납화합물, 벤젠, 아크릴로니트릴, 페놀화합물, 포름알데히드 * 최대배출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오염물질 또는 배출시설등의 경우는 현행 대기법 또는 수질법의 배출허용기준 준용 ▶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안 (환경부)	1.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기준(신설) ㅇ 국제표준 개정(ISO 14065:2020)에 따라 온실가스에서 환경정보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온실가스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의 분야별 인증기준 등을 구분하여 세부 인정기준(별표3)을 신설 *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14065:2013(온실가스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요구사항)이 ISO 14065:2020(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요구사항)로 개정 ▶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규정 제6조	1.비중요
5	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(행정안전부)	1. 청사 출입자의 출입제한(신설) ㅇ 청사 보안을 위해 수립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▶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. 청사 출입자의 질서유지(신설) ㅇ 폭발, 화재, 무단침입 등 각종 유형의 위해행위로부터 안전한 청사 구현을 위해 출입자의 금지행위를 나열하고, 신체적인 유형력(有形力) 행사 및 보안장비 사용을 허용함 ▶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	1.비중요 2.비중요